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의 금융차명거래 금지 청원서

■ 청원 취지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차명거래나 도명거래를 막는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각종 게이트 등 부패 사건을 통해 차명거래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고, 부동산의 경우 차명거래에 대해 세금은 물론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차명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가명거래를 막을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명의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나 도명거래를 막는데는 속수무책이다.

일례로 2003년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경영으로 영업이 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을 실사한 결과, 가족과 친구 등의 이름을 빌려 거액을 나누어 예금한 예금주가 2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 예치 금액은 80억 원에 달했고, 이는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전체 예금액 775억 원의 10%가 넘는 금액이었다.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금융실명제의 허점을 이용한 차명거래가 만연해 있으며,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서 금융실명제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제자리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탈세, 탈법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법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45조 2항)을 마련하고 있으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 건물을 제외한다)”으로 제한하여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을 제외시켜 이 역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공백

▣ 청원 내용

금융차명거래의 금지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조항 신설.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 신설.
- 도명거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금융거래 체결시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의 채결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금융자산의 차명거래가 있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

청 원 인

성 명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대표 문경식(한국) 외 10인

주 소:

전화번호

공연
전시